

무형문화재 정책 변화에 따른 <동래 기영회>의 무형문화재적 가치

김형근*

| 목 차 |

- I. 무형문화재의 범주 확장
- II. 부산시 무형문화재 잠재목록의 필요성
- III. 무형문화재로서 '한국의 계(契) 문화'와 동래 기영회
- IV. 무형문화재로서의 동래 기영회 가치 검토
- V. 향후 필요 조치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무형문화재 정책 변화, 더 정확하게는 '지정 범주'의 확대에 인하여 그간 무형문화재로서 검토되지 않았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부산시 또한 향후 부산시무형문화재 신규 지정변화 필요성이 있다. 이에 '동래 기영회'를 하나의 샘플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국가 및 시도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연 및 기능을 무형문화재로 삼아왔지만, 최근에는 전통지식, 구전전통, 관습 등의 범주가 유네스코의 영향으로 추가되었다. 본격적으로 최근의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신규로 지정된 종목들은 이 분야

*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 2499125@daum.net

들이며, 향후에도 이 분야의 지정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시도에서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확대된 영역에 맞는 위원회 인적 구성과 예비 종목에 대한 리스트업(list-up)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동래 기영회는 1846년(헌종 12년) 노년의 동래부 퇴임 이사와 무임들이 조직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계(契)이다. 구체제가 무너지는 갑오개혁과 국권을 침탈당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점차 공적 역할 감당하면서, 오늘날까지 동래 지역의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그룹으로 지속되게 된다. 그 역할은 의례, 교육, 사회·경제, 문화 등 한 지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치고 있다. 이런 동래 기영회의 역할은 새롭게 확장된 무형문화재 범주 중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에 부합됨을 밝혔다.

주제어 : 무형문화재, 부산시무형문화재, 기영회(耆英會), 부산 동래, 계(契), 생활관습

I. 무형문화재의 범주 확장

최근 국가에서는 기·예능 중심이 아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 전반으로 그 문화재 지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 이런 경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간 지정 검토되지 않았던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이 주목된다. 국가무형문화재의 방향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시·도무형문화재의 방향 또한 바뀌게 될 것이며 부산시 또한 예외는 아니다. 본고는 이런 무형문화재 정책 변화를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하는 발제 성격을 가진다. 그런 가운데 주목해야 할 하나의 무형문화재 예비목록으로 ‘동래 기영회’를 예증삼는다.

지금까지 무형문화재는 ‘기·예능’으로 표현되는 것들 중심으로 지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치담그기

(2017)', '제염(2018)', '운돌문화(2018)', '장담그기(2019)'처럼 특정한 장인, 예술인이 아닌 것들이 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새삼 '무엇이 무형문화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명할 수 있는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이다.¹⁾ 1962년 개정되어 여러 번의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18년 6월 개정, 7월 시행되고 있다. 이 문화재보호법의 1장 총칙 중 제2조에는 무형문화재의 정의와 7개의 범주를 정해놓고 있다.²⁾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예·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³⁾

이와 달리 그 이전까지는 기·예능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범주를 설정했다.⁴⁾

-
- 1) 국가무형문화재의 범주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이른바 무형문화재법이라 불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 문화재보호법 제1장 제2조 ([시행 2016.3.28.] [법률 제13249호, 2015.3.27., 일부개정]). 국가 법령 및 시도 조례 등의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 3) 문화재보호법 제1장 제2조 [시행 2014.8.29] [법률 제12692호, 2014.5.28, 일부개정]).
 - 4) 개정되기 전의 것을 보면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2016년 2월 3일)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이 확장의 결정적인 역할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세계무형유산’)⁵⁾ 등재이다.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한 한 조건으로 해당국에서의 보호조치가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였다.⁶⁾ 그래서 먼저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것을 유네스코로 추천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범주 체계로서는 포섭할 수 없는 문화들이 문제였다. 이런 국내법상 무형문화재의 범주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범주를 어느 정도 일치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범주의 확대가 진행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의 범주는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일명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채택된다. 이 협약의 2조 2항에는 5가지의 범주가 규정된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5) 2001, 2003, 2005년 지정 때까지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 한편 이런 변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의도 있다. 정수진,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정치학: 유네스코 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6, 실천민속학회, 2015.
- 6) 현재 이 항목은 기본 등재기준이 되었다. 그 기준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기준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http://heritage.unesco.or.kr/ich_reg/ich_reg_criterion/, 검색일: 2018. 8. 8.).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이 그것이다. 이 중 관습과 의식을 분리하고, 유네스코에는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를 추가한 것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7가지 범주인 것이다.⁷⁾ 이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가무형문화재와 UNESCO 무형문화유산의 범주 비교

한국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 범주	UNESCO 무형문화유산 범주
전통적 공연·예술	공연 예술 performing arts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전통 공예 기술 traditional craftsmanship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구전 전통 및 표현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7) 이 범주 중 특히 ‘놀이’의 경우는 그 분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좌수영어방놀이 이는 수영머리치후리질소리가 더 명확한 명칭이다. 따라서 이는 놀이가 아닌 ‘구전 전통 및 표현’에 들어가야 한다. 이뿐 아니라 현행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반적인 분류와 명칭에 대한 재점검이 현장과 학계에서 요구해왔고, 문화재청에서는 2018년 3월 ‘국가 무형문화재 종목 분류체계 및 명칭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 중이다.

범주가 확장된 2016년 3월 이후 신규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11 종목이다. 제다(2016), 씨름(2017), 해녀(2017), 김치담그기(2017), 제염(2018), 온돌문화(2018), 낙화장(烙畫匠)(2019), 장담그기(2019), 전통어로방식-어살(2019), 불복장작법(2019), 삼베짜기(2019)가 그것이다. 이들 중 낙화장, 불복장작법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관념했던 ‘기·예능이며, 한 사람의 기·예능보유자가 있던’ 종목들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반 관습, 일상생활 문화에 해당되는 신규 종목들에서는 실제 어떤 특정 보존회나 보유자를 두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이러한 특정 지역권이나 한국 전체를 영역으로 하는 일반문화에 대한 신규 지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당분간은 기·예능 종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⁸⁾

한편 2016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보존과 진흥을 위해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⁹⁾ 이는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8) 필자는 문화재청의 연구용역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비목록 마련을 위한 연구’(2017년)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 검토가 필요할만한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시론적으로 작성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자 포함 여러 학자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 이미 기·예능 분야에서 국가무형문화재(시도무형문화재는 사정이 다르므로, 국가무형문화재로만 한정해서) 중요가 될만한 것은 다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선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역사성’ 때문이다. 그 역사성의 명확한 시대 구분은 없지만 근대 이전에 생성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에 만들어지거나, 단절 후 재현한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대상으로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고 이 기간을 지속한 문화예술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물론 향후 역사성의 한계가 근대로 확장되면 신규로 지정할 종목들은 많아지게 된다. 예를들어, 창극, 여성국극, 입춤, 사물놀이 등이 있다. 실제 문화재청에서는 2018년 6월 ‘여성국극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하고 있다. 지정가치 조사가 곧 종목 선정은 아니지만, 이 용역의 과정과 결과 이후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역사성의 시대 한계에 대한 학계의 토론이 촉발되리라 기대된다.

9) 과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존재했지만,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비중있게 담고 있지 못했다. 이런 한계 인식과 필요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형문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을 법률 제13248로 2015년 3월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조례에서도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범주는 문화재청의 7분법을 준용하게 된다. 서울시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제1장 2조에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이라 명문화하고 있다.¹⁰⁾

부산시의 경우는 어떠할까? 현재 부산시의 무형문화재 조례에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제1장 2조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의 지정에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제2조(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의 지정)

-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1조의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¹¹⁾

27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바로 이 무형문화재법의 제정과 시행을 기하여 시·도의 무형문화재 조례가 제정된다.

10)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제2조(서울특별시조례 제6315호, 2016.2.3., 일부개정)
 11)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제2조(부산광역시조례 제5349호, 2016. 6. 8., 제정)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으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지방 조례란 모범을 따라가게 되므로, 따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법 범주를 준용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 문장처럼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첫 번째라면 별반 문제는 없으나 두 번째의 의미라면 문제가 생긴다. 곧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규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무형문화재도 그러했듯이 기·예능 중심으로만 지정해왔던 관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문화재의 신규 지정의 경우 문화재위원들의 발의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정하지 않는다. 신규 지정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요청을 통해 그 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나 보유자 없는 종목, 특히 전통지식과 관습 분야는 무형문화재로 검토되기가 힘들다.¹²⁾ 따라서 무엇보다 부산시는 조례에 ‘무엇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범주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주 체계 확장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변화 노력,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이 아닌 부산시 차원의 직권 지정 검토 등이 요구된다.

12) 예를 들어, ‘마을숲’이 그러한 예이다. 내륙에는 풍수지리상 비보(裨補)의 목적으로 인위적 마을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안가의 경우는 방풍(防風) 또는 방조림(防潮林)의 기능으로서 마을숲을 조성한다. 경남 남해의 경우는 18개 마을에 지금까지 방풍림이 유지되고 있다. 방풍림은 단순히 자연물에 국한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마을 사람들의 금기, 신앙, 설화, 사회적 기능 등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무형문화재로 신청해달라는 요구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국가나 시도에서 직권으로 지정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국가무형문화재에서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김치담그기(2017), 제염(2018), 온돌문화(2018), 전통어로방식·어살(2019) 등을 지정하였다.

II. 부산시 무형문화재 잠재목록의 필요성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가의 문화재 정책 기조가 UNESCO 세계무형유산과 연동되어 나아가고 있다.¹³⁾ 일본과 중국과의 UNESCO 세계무형유산 등재 경쟁이 심화된 2009년부터의 고민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¹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중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당시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던 ‘관습과 전통지식’ 분야의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해야 했다. 무엇보다 후자에 대한 작업은 쉽게 회의 몇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에 문화재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한국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분류체계 및 기초자료 연구’(2009), ‘한국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2011),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연구—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비지정문화재 예비 대표목록 선정’(2012)이 그것이다.¹⁵⁾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예규로 제정하면서, 예비목록 작성을 시스템화하였다.¹⁶⁾

13) 이에 대한 논의는 강경환·김정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의 수용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문화재』43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참조.

14) 현재는 한 국가에서는 2년 1종목 추천할 수 있으며, 국가 간 공동등재의 경우는 예외가 된다.

15) 『한국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분류체계 및 기초자료 연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2009.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간행물란에 pdf파일이 서비스되고 있다.) 2011, 2012의 결과물은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에 이어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위한 예비 대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7년 진행한 바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비목록 마련을 위한 연구’(2017) 이 결과물도 현재 비공개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지정 0순위 종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판단 때문에 사료된다.

16)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예규 제2012-109호, 2012.4.17. 제정)

2009년의 결과보고서에서는 먼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5범주를 대분류로 하고, 한국의 지역들을 중분류로 하여 167개의 종목을 추려 내었다. 그러나 이런 분류는 너무 세분화되었고, 유네스코의 경우 점차 ‘한국적’인 이른바 범지역적 보편문화가 등재되는 추세를 반영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대표목록 21가지도 같이 도출해냈다. 부산시의 경우는 이중 10개의 종목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표 2> 『한국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중 부산의 무형문화유산

범 주	추 천 종 목
구전 전통 및 표현	부산 사투리, 용소민요
공연예술	부산진야류, 구덕망개, 가락오광대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 행사	구포별신굿, 동래줄다리기, 녹산봉수대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동래과전
전통 공예 기술	연 제작 및 연날리기

추천된 종목을 보면 여러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문제는 현재 전승 단절이 된 것들이다. 부산진야류, 동래줄다리기, 구포별신굿¹⁸⁾이 그것이다. 구덕망개다지기소리는 2001년에 이미 부산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기에 비지정무형문화유산이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이중 가장 문화재로서 가능성 있는 종목은 ‘부산 사투리’이며, 이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는 ‘부산 사투리’가 종목 이름이 아니라 ‘한국의 지역언어’라는 범칭 형식이 될 것이다.¹⁹⁾ 굳이 국가무

17) 『한국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분류체계 및 기초자료 연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2009. 39~40쪽의 표 중 부산시에 해당하는 것만 추렸다.

18) 현재 구포별신굿이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의 굿은 전통적인 이 지역 굿이 아니다. 즉, 행위 전승은 이미 단절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무형문화재에서는 행위 전승이 중요한 척도이다.

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부산시무형문화재로서 ‘부산어(부산말)’은 적극 검토할만하다.²⁰⁾

2011, 2012년에는 어떤 종목들이 언급되었는지 그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수진의 논문에서 이 종목들이 표로 제시되고 있어 참조할 수 있다.²¹⁾

<표 3> 2011년 인류무형유산 예비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아리랑, 도깨비, 메나리, 전래동요, 이야기꾼, 서사민요, 무속 신화
사회적 관습, 신앙의식과 축제	중가문화, 연등회, 지계, 오일장, 어촌계, 상계, 전통혼례, 제례, 그네타기, 윷놀이, 씨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김치, 인삼, 구들, 잡녀, 막걸리, 장(장류), 천일염, 꺼메기(질그릇), 짓갈, 죽방렴, 풍수, 갯벌어로, 추석, 정월대보름, 삼복, 장승과 솟대신앙, 출생 및 육아의례, 상장례, 전통항해술, 토경비결, 떡, 보 관개기술, 사상체질의학
공연예술	시나위, 향악정재, 사물놀이, 거문고정악, 창극, 연례악, 아박무, 향발, 선유락, 당악정재, 가인전목단, 춘앵전, 장고춤, 부채춤, 소고춤, 통소음악, 해금음악, 현선도, 수연장, 오양선
전통공예기술	x

- 19) 너무 세분화해서 문화재를 지정하면 향후 한국의 무형문화재는 수천 가지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문화재 아닌 것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굳이 ‘문화재 정책’이 왜 필요할까라는 회의에 부딪히게 된다. 또 너무 문화재 자체가 일반화되면 기존의 기·예능 종목 전승자의 경우 해당 문화재 전승에 대한 전승 의욕들이 떨어질 염려도 크다. 현장 전승인들의 경우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이유로 ‘무엇인가 특별하기에, 남들은 하지 않지만 나만은 사명감을 가지고’라는 이유가 크다.
- 20) 아니면 제주도처럼 조례를 통해 제주어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제주시는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21) 정수진, 앞의 논문, 306~307쪽.

<표 4> 2012년 인류무형유산 예비목록

구전 전통 및 표현		내방가사
사회적 관습, 신앙의식 과 축제	사회적 관습	격구, 화전놀이, 두레백이, 송계, 초분, 활쏘기놀이, 명태 덕장, 소싸움, 노점상, 사시랭이
	신앙의식 과 축제	노들제, 관제묘, 개천대제, 산백이, 동해안오구굿, 서울재 수굿, 제주 수산리본향당 신앙, 삼척지역 단오굿, 산릉제 향, 동해안여서낭제, 남원춘향제, 지하만들기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약초채취, 솟굽기, 탐신앙, 폐백음식 만들기, 논호미제추 기술, 건모기술, 뒷도구 수리기술, 골갈이, 기우제, 비빔 밥 조리, 산나물 채취와 조리, 사찰음식의 조리, 무속음식 의 상차림, 중가음식의 상차림, 순창고추장 만들기, 메밀 국수 만들기, 돌살, 삭힌 홍어 제조, 도깨비굿
공연예술		전주대사습, 여성농악, 여성국극
전통공예기술		혁필화, 전통도검 제작, 상여제작, 옷칠채취, 섬패기술

이 표에서 보았듯이 과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예능 분야에 서는 검토할만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관습과 전통지식’에 비해 적다. 또한, 추천 종목들을 보면 앞서도 말했듯이 아직까지는 역사성에서 검토대상이 되지 못하는 근대 예술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사물놀이, 창극, 장고춤, 부채춤, 여성농악, 여성국극이 그러한 예들이다.²²⁾

‘사라지기에는 너무도 우리사회에 주는 가치가 큰 것들을 함께 지속 시켜나가는 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문화재 정책의 존재이유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물어야

22) 위의 표를 놓고 종목 하나하나 따지면 많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문제 제기가 없을 만큼 완벽한 예비목록 작성은 불가능하다. 각 종목의 범주가 다르고, 그 존재 양태가 다른데 단일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능하더라도 문화적 다양성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적 관점’에서도 무식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역적인 기준으로 종목들을 선정하기 보다는, 여론 조사처럼 다수 학자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귀납적으로 기준틀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의 표에 언급된 종목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여기서는 가리려 하지 않겠다.

한다.²³⁾ 기·예능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어 공연, 전시 등을 하면서 그 존재 의미를 발화한다. 그를 통해서 연구자뿐 아니라 대중들도 그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 하지만 그러한 인적 구심점이 없고, 공연과 같은 이벤트로 그 존재를 드러낼(showing) 수 없는 문화들은 관심 없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만다. 돌아보면 ‘옛날엔 그랬는데’라는 추억과 회상 정도로만 치부되곤 한다. 그러기에는 너무 아쉽고 중요한 것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문화재청에서 진행했던 무형문화유산 또는 무형문화재 잠재목록 작성이다. 부산시도 무형문화재의 다양한 범주를 폭넓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이 작업의 선제 작업으로 이 잠재목록 작성은 긴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곧 문화재의 지정에 있어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²⁴⁾

부산시 무형문화재 잠재목록은 한 개인이 말할 수 없는 큰 작업이다. 현재 기·예능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시문화재위원회 구성원들로만 수행할 수도 없고, 몇 명의 한정된 연구진으로 짜여진 공개입찰 방식의 학술용역으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전통지식과 관습은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건축학, 미술학 등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단일한 학문 분류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복합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온돌문화’가 그것이다. 온돌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들을 정교하게 깔 수 있는 장인이 필

23) 이 개념은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 신청서에서 강조되는 키워드들에는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기여, 인권 또는 젠더 존중, 사회기능성(social function) 등이 있다.

24) 지금까지 국가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연역적인 틀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가치 검토하고 선정하는 예보다, 이른바 ‘민원성 요구’에 의해 가치 검토하고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현재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큰상을 받아오면 그것이 곧 문화재로의 등용문이 되었다. 이런 지정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요하다. 과거에는 구들장인을 보유자로 지정하는 이른바 기능 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다. 구들은 집을 짓는 이른바 건축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축은 유형문화의 관심대상이다. 그럼에도 무형문화로 바라본 것은 한국인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단일하게 딱딱 떨어지는 기·예능 종목 지정 때와는 달리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Ⅲ. 무형문화재로서 ‘한국의 계(契) 문화’와 동래 기영회

국가에서는 2016년 무형문화재의 범주가 확장되고,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해이다. 그리고 실제 그 범주를 적용하여 그간 무형문화재 지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 관습과 전통지식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해이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아직까지 ‘관습과 전통지식’ 분야를 지정한 사례는 없다. 앞서도 말했지만 현장에서 요구되어 지정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이 분야는 지정 주체인 자치단체의 의지에 연관되기 때문이다. 즉,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일반 민원성 현안들이 산적한만큼 문화재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²⁶⁾

25) 한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만드는 장인이 ‘침선장’이라는 기능 분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한복을 입는 것은 의복문화이므로 ‘김치’, ‘온돌’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위의 표에 전통지식과 관습 분야의 종목들 상당수가 오히려 범주를 넘나든다.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UNESCO 무형문화유산의 범주 표기는 복수 표기를 인정하고 있다. 범주는 분류하여 빠르게 인식하기 위한 편의적 도구이지, 그것이 문화를 규정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관습과 전통지식 분야로 확장해보면 부산시에서 지정 검토해야 할 종목들이 상당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필자는 그 중 ‘동래 기영회(耆英會)’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주목하게 된 계기는 앞서 말했듯이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예비목록 마련을 위한 연구’(2017년) 진행 중 기존에 검토된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생긴 아이디어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2011, 2012년 문화재청 연구용역 결과에 수록된 여러 계(契)들, 이를테면 ‘어촌계(漁村契), 상계(喪契), 송계(松契)’ 등에서 촉발되었다.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전통적인 계(契)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다.²⁷⁾ 일단은 범박하게 ‘한국의 계(契)문화’를 표제어로 삼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개별 계(契)의 특성이 묻히는 단점이 있

26) 흑 문화의 생산자나 그를 소비하는 일반인들은 이런 문화재에 대한 부족한 관심이 문화재위원회의 임무 방기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선거에 민감하여, 민원성 현안 해결을 우선시하는 선출직 시장과 군수의 의지를 일깨울 수 있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뿐 아니라 시도에서도 문화재위원회는 상근기구가 아니라 안건 발생시 소집되는 비정기 회의를 통한 단순 자문기구이다. 게다가 학문 연구로서의 문화와 문화재로서의 문화는 그 격차가 존재한다. 문화재는 학문적 엄정성에 더하여 정책적인 고려까지 함께 해야 하는 특수성도 있다. 게다가 그 구성 또한 전통적인 기·예능 전공자 중심이어 관습과 전통지식 분야 전공자가 없다. (현재 문화재청의 경우 2016년부터 문화재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때부터 전통지식 관련 전공자들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 경우는 역시 무형문화 분야는 기·예능 관련 전공자들이다.)

따라서 문화재 정책의 거시적 계획이란 전문 연구자들이 수년의 축적된 연구를 통해 전공 분야를 가로지르는 협업으로 이루어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보다는 부산발전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이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여기에 문화재위원들이 협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연구용역으로 진행된다면 과업지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하며, 과업 과정과 결과를 책임있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27) 선택은 배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나 단체 등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 이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황해도굿이 그러하다. 서해안대동굿 및 배연신굿의 문화재로 김금화가 지정됨에 따라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우우주 등 황해도 만신들이 배제된 결과를 낳았다. 똑같은 굿을 하고, 오히려 굿의 기량이 뛰어나도 김금화의 제자들로 전승체계가 짜여져 있어, 오늘날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례는 충분히 많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배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정 당시에 가급적 개별 사례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적어도 일정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계의 표본들을 찾아내는 것이 선제 조건이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표본으로서 동래 기영회가 적절한 사례라 보았다.²⁸⁾

한국에는 수많은 계(契)가 존재한다. 그 설립목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계들이 존재한다.

과거의 여러 분류를 종합하면, ① 생산·식리·공동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집단 : 농계(農契)·보계(洑契)·식리계·구우계(購牛契), ② 동리의 공공비용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집단 : 동계(洞契)·보안계(保安契), ③ 계원의 복리 및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적 집단 : 혼상계(婚喪契)·혼구계(婚具契), ④ 조상의 제사 혹은 동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집단 : 종계(宗契)·문중계·동제계, ⑤ 계원 자체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집단 : 학계(學契)·서당계, ⑥ 계원의 친목과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목·오락 집단 : 시계(詩契)·문우계(文友契)·동잡계·유산계(遊山契)와 같이 경제·정치·복지·종교·교육·오락의 여섯 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계들도, 그리고 여러 기능들을 종합하고 있는 계들도 존재한다. 너무도 다양하고, 입체적이기에 하나의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다. 아무튼 집단의 공동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조직체로서 계(契) 문화는 한국의 집단성을 반영하기도 하고, 공동

28) ‘계(契)’라는 키워드 외에 ‘관제묘’ 또한 동래 기영회를 떠올리게 하였다. 관제묘는 중국의 명장 관우를 모신 사당으로 소위 관왕신앙의 성소이다. 입진왜란에 파병된 명나라 장수들의 신앙으로부터 전래되어 토착화된 신앙이다. 서울, 강진·안동·성주·남원 등에 국가 주도의 관왕묘가 세워지지만, 개인이나 마을 단위에서 관왕신앙을 가지고 관제소상이나 탕회를 모시는, 이른바 관왕신앙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현재는 없어졌지만 동래에도 관왕묘가 있었고, 최근까지 관왕제사를 모셨다. 이 관왕제의 의례주체가 바로 ‘동래 기영회’였다.

29) ‘계(契)’(『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체성을 설명해낼 수 있다. 관계맺기, 공동체, 협업, 더불어 함께 등의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다.³⁰⁾ 오늘날도 문중, 친족, 친목계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살아서 기능하는 문화 중 하나라는 장점도 있다.³¹⁾ 부산시에서도 다소 특색있는 계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동래 기영회인 것이다.³²⁾ 사실 동래 기영회는 전국적으로 봐도 희소성이 있다. 전국 읍치 지역에는 보편적으로 있었을 퇴임 이서·무임 집단의 모임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은 전북 남원과 부산 동래뿐이기 때문이다.³³⁾

-
- 30) 물론 한국사회에서 ‘계’가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른바 사철고리계가 성행했고(오늘날도 존재한다), 한때는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5,60년대 뉴스에는 소위‘계소동(契騷動)’ 관련 기사를 만날 수 있고, 1980년 11월 14일 『동아일보』 ‘한국사회 그 비리와 폐습’ 연재에 契(계)바람에 대해 다뤘다.) 오늘날 일반인들 인식 속에서도 계를 ‘돈놀이’하는 모임으로, 또는 돈 모아서 무언가를 함께 즐기는 친목 모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 31)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위축되고, 소멸위기에 놓였지만 그래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검토 가능하다. 일단 행위 전승이 단절된 것은 복원, 재현하지만 무형문화재로의 인증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무형문화재 관계자의 시각이다.(물론 앞으로 엄격한 잣대가 유연해지면서 근대의 문화가 무형문화재로 고려되어지는 시기가 되면, 합리성을 갖춘 복원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유형문화원 수원 화성처럼.)
- 32) 심사과정에서 한 심사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부산시의 계 문화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이후에 다른 계들과의 상호비교 관계 속에서 ‘동래 기영회’의 특수성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온당한 지적이지만, 선행연구에서 그 전모를 알 수 없었고, 본 연구자 개인도 그것을 정리할 만큼 부산 지역의 현지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부산의 계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 33) 남원은 이 계를 기로회(耆老會)라 부른다. 일제강점기 때 ‘남원양노당南原養老堂’으로 개칭되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남원 기로회’를 공식명칭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계의 양상과 역사는 이훈상, 『조선 후기 이서집단과 무임집단의 조직 운영과 그 특성:전라도 남원의 각종 선생안』, 『한국학논집』 17, 1990에 보고된 바 있다. 그 이후 강성복, 『400년 향리조직 남원기로회南原耆老會』, 『지역무형문화유산목록03-남원의 무형문화유산』, 국립무형유산원, 2007에 현재 활동과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들을 정리하였다. 한편 이훈상, 손숙경은 이 계를 ‘노년연령집단’이라는 사회학적 용어로 이름짓기도 하였다(이훈상, 『19세기 후반 향리 출신 노년 연령집단과 읍치의 제의 그리고 포플러 문화』, 『민속학연구』 27, 2010. 손숙경, 『한말 식민지기 동래 지역 노년 연령집단 기영회와 이들의 문서 I』,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4). 다만 ‘노년연령집단’이라고 하면 단순 나이만을 의미하는 듯한 너앙스가 크므로 ‘향리 출신’, ‘읍치’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야 의미가 분명해진다.

동래 기영회는 1846년(헌종 12년) 노년의 동래부 퇴임 이서와 무임들이 조직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계(契)이다.³⁴⁾ 그 이전에는 퇴임 이서의 안일당(安逸堂, 질청감독회의소)과 퇴임 무임들의 세검당(洗劍堂, 무청감독회의소)이 독립되어 있었다. 이 둘이 통합되어 기영회가 된 것이다. 이 모임은 시사(詩社)와 같은 친목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과 함께 이 모임은 변화의 요구를 받게 된다. 이 모임의 산실과도 같은 무청·질청이 폐지되고, 이곳의 전래 자산에 대한 처리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그 재산을 나누어 회원 자손들에게 분배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공익사업을 통해 유지해가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 결과 과거 수성청에 ‘기영회 학교’라는³⁵⁾ 이름으로 고등학교를 세운다.³⁶⁾ 바로 이 지점이 회원들 간의 친목과 이익을 도모하는, 다소 폐쇄적 성격의 모임이 공적으로 전환하는 계기와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자칫 공유재산을 후손들 각자들에게 분배했다면 지역사회의 유의미한 역할을 못하는 조직이었을 것이고, 조직의 운영 자산 또한 고갈되면서 지금까지 지속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전래재산의 처분을 기영회 회원들만의 회의로 결정하지 않고 동래의 유지, 학교 학생, 기영회 회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의 과정을 거쳤음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기영회’의 공적 성격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³⁷⁾

34) ‘기영계서(耆英契序)’(1853년의 기록으로 동래기영회, 『재단법인 동래 기영회 170년사』, 동래기영회, 2016. 171~173쪽에 수록.)

35) 1906년에 기영회 회장 송상종이 설립한 삼락학교를 1907년에 확대 개편하고 ‘동명학교’라 변경한다. ‘기영회 학교’라 함은 곧 이 확대 개편한 ‘동명학교’로 보인다. 이후 동명학교는 1916년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 1922년 관립동래고등보통학교로, 1925년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1938년 공립동래중학교로 교명이 계속 변경되며, 1950년 동래고등학교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6) ‘수면노소신사총회완의(首面老少紳士總會完議)’(동래기영회, 앞의 책, 2016. 183~193쪽에 수록.)

37) 이런 변화가 기영회 내부의 인식으로 인한 자발적 변화이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설립 단계인 19세기 ‘동래 기영회’는 회원으로 가입된 이들 간의 상호 부조 목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구체제가 무너지는 갑오개혁과 국권을 침탈당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점차 공적 역할 감당하면서, 오늘날까지 동래 지역의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그룹으로 지속되게 된다.³⁸⁾ 그 역할은 의례, 교육, 사회·경제, 문화 등 한 지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⁹⁾

<표 5> 동래 기영회의 역할

분야	활동내용	시기	비 고
의례	송공단향사	1930	지속_동래 기영회 주최, 동래시장번영회 주관
	의충제향사	1930	주최변경_동래구 주최, 동래문화원 주관
	관향묘향사	1930	중단_1950년 관향묘 훼손
	거사단향사	1930	중단
	영보단제사	1930	중단

- 다른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편‘계(契)’는 가입회원들로 한정되는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그 당시에도 기영회의 가입은 기존회원의 자체들로 한정되어 있고, 공동자산의 운영비에서 회원들의 대소사 협찬과 매년 음력 8월과 12월에 ‘질찬금·세찬금’을 지급하였다. 1963년에 이르러 자손이 아닌, 회원 2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자가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현재는 이사 또는 감사 3인의 추천).
- 38)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변광석, 『동래 기영회의 활동과 변화를 통해본 지역성』, 『역사와 경계』 84, 2012 참조.
- 39) 동래 기영회의 활동 들은 다음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미 해명된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서 그 내용을 다루지 않고 그 요점만을 표로 제시한다. 『재단법인 동래 기영회 170년사』, 동래 기영회, 2016. 김동철, 『19세기 후반 동래상인의 존재와 활동—都中 洪在昇, 朴時暉, 李瑱의 사례—』, 『지역과 역사』 38, 2016. 김승, 『한말 일제하 동래 지역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지역과 역사』 6, 2000. 변광석, 위의 논문, 2012. 손숙경, 『19세기 후반 관왕 숭배의 확산과 관향묘 제례의 주도권을 둘러싼 동래 지역 사회의 동향』, 『고문서 연구』 23, 2003 ; 『19세기 중반 동래 지역 기영회의 결성과 그 역사적 의미』, 『역사와 경계』 83, 2012 ; 『한말 식민지기 동래지역 기영회의 사회활동과 경제기반』, 『석당논총』 68, 2017. 이훈상·민선희, 『조선 후기 동래의 지배 엘리트와 이에 관한 고문헌 자료』, 『항도부산』 10, 1993. 이훈상·손숙경, 『조선 후기 동래의 무칭선생안과 무임총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9.
- 40) 기존 ‘동래 기영회’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적 기여를 알 수 없었으나 이훈상, 『식민

교육	동래부학교 설립	1898	1904 개양학교에 흡수, 1906 삼락학교에 흡수
	삼락학교 설립	1906	1907 동명학교, 1916 동래고보, 1950 동래고로 변경
	동래유치원 인수	1979	지속운영
	장학사업	1983	지속운영
	문화회관건립	1984	현재 입시학원인 '대동학원'에 임대
사회·경제	국채보상운동	1907	발기인 대부분이 기영회 인물
	동래은행 설립	1918	발기인 대부분이 기영회 인물
	동래청년회 회관 기증	1923	1934 다시 기영회 관리, '동래일성관'으로 명칭 변경
문화	동래야류 지원 및 연행 참여 ⁴⁰⁾	1935	현재 동래야류와의 교분은 단절됨.

동래 기영회의 역할 중 의례, 교육, 사회·경제 분야들은 이미 기존 동래 기영회에서 편찬한 기록도서와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해명이 된 바 있으나, 문화예술과의 관련성은 좀처럼 연구성과가 없다. 다행히 이훈상에 의해서 동래 기영회와 동래야류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935년 부흥 시기에 적극적으로 기영회 인물들이 연회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했음을 밝혔다.⁴¹⁾

지기 경남 지역사회의 탈출 “부흥” 운동과 주도자들 - 동래 야류 연행의 문화정치학 -, 『대동문화연구』 79, 2012를 통해 동래 기영회와 동래야류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935년 부흥 시기에 적극적으로 기영회 인물들이 연회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했음을 밝혔다. 한편 한국전쟁 전후로 또 한번 동래야류는 흐지부지되었고, 1965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을 준비하면서 다시 복원되기에 이른다. 이때 동래 기영회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주도적인 역할을 신우언, 이장명이 맡았다. 이 신우언은 1961년, 이장명은 1965년 기영회에 가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기영회의 인물들이 연회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65년에는 그 구심이 동래 기영회에서 분리되어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가 독립적으로 설립되기에 이른다.

41) 이훈상, 앞의 논문 2012. ‘부흥’이라는 단어는 1935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민속학자 송석하의 글에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 1935년 4월 13일, 3면, ‘민속극 동래야류—그 ‘부흥’에 際하여—’). 한편 동래야류 연구들에서는 동래 기영회의 지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그러한 결과들이다. 천재동, 『동래야류연구』, 『서낭당』 4, 1973. 심상교, 『동래야류 전승과정 연구 1 - 문장원, 천재동 증언을 중심으로』

송석하가 ‘부흥’이라고 부를 정도였던 1935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래 야류가 전승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기점에 중단되게 된다. 그리고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3.1운동을 기념할 겸 동래야류를 다시 한번 공연하게 된다. 이 공연의 자금을 위해 청년들은 ‘지신밟기’를 통해 기금을 모은다.⁴²⁾ 이 때도 단 1회로 끝나고 동래야류의 전승은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1963년 부산시는 광역시가 되어 독립하며, 매년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1개 팀을 출전시켜야 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할 팀을 모색해야 했다. 그러면서 주목된 것이 동래야류였다. 이 과정에서 동래 출신 민속학자 최상수, 당시 부산신문 사장 이자 기영회 회원인 박수영이 있었다.

그전부터 최상수가 동래 사람이니 <동래야류>를 뭐를 해야 되겠다 키는 거를, 인제 고성하고, 그거는 지가 고성하고 통 하고는 자기 가 다 해, 조사를 해가, 도지에도 다 나와가 있어요. [** 제 이공인가] 다 나와가, 그때 그걸 보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젠 동래는 자기 고향에 있는 민속놀이가 안나오니까. 해마중 부산시에다가 문공부에서 <동래야류>를 재기하라고 하는 공문을 내도, 부산서는 ‘재기불능이다’ 한 기라. 그니까 보고가 ** 문화부로 올라오는데, 6년도에 와가지고는 인제 정월달에 와가 부산시로 통해가, “틀림없이 있는데 왜 묻하느냐?” “시장이 그면 잘못 돼가 하는 거까?”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를 보고 추궁을 하니까. 그때는 시는 행정적으로 받아드기는 시장이 받아들였지마는 그 넘어가기를 교육위원회에다 넘어간 기라. 교육위원회에다가 취급을 한 기라. 교육위원회서 인자 또 수소문을 하니까, 부산일보 사장이 그때 박수영 씨라고 동래 기영회, 이회보써 처남 되는 사람이야. 박수영 씨라고 이 이분한테 간 기라 교육위원회서. 부산일보 사장한테 가니까, 부산일보 사장은 그 또 기영회 회원이

로 -], 『어문론집』 47, 2003.

42) 천재동, 위의 논문, 282~283쪽.

야. 그 기영회에다가 넘겨져가, 기영회 그 저 오입쟁이들이 굉장하 많
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찌노, 과거에 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 (조사자:누구요?) 말뚝이 하던 사람. 박덕읍
이라고.⁴³⁾

그래서 동래 기영회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대회 출전을 준비하게 된
다. 연습 장소도 기영회가 운영하는 동래유치원 마당이었다.⁴⁴⁾ 그리고
1965년 부산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동래
기영회 회원인 신우언, 이장명이 맡았다.⁴⁵⁾ 1935년대에는 연회의 전면
에 동래 기영회 인물들이 있었지만, 1965년에는 후원의 역할로만 그 역
할이 축소된다.⁴⁶⁾ 첫 출전한 대회에서 뜻하지 않는 대통령상을 받은 것
이 기회가 되어 1965년 5월 1일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명예회장은 동래 기영회 회원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곽상훈이
맡았고, 회장은 부산교대 학장이었던 김하득이 맡았다. 곽상훈은 동래
기영회 회원이므로(1960년 가입) 여전히 동래 기영회가 동래야류를 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6년 바로는 아니겠지만 부산민속예술보

43) 김영희,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79-문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150~151쪽. 이 자료는 예술자료원이 운영하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www.daarts.or.kr)에서 볼 수 있다.

44) 김영희,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79-문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154쪽. “이러킵 해가지고 헨 기 난중에는 종합적으로 인제 연습을 해보니까, 동래 도화동이라고 그 유치원 있는 거기 있는 기영회 소유지. {예, 예} 동래 학의 머리가 있는 쫘미야. 지금 인제는 아직까지 있습니다마는. 으 거기에서 인제 숲이 좋으니까, 거기서부터 굉장도 있고 하나까.”

45) 이 신우언은 1961년, 이장명은 1965년 기영회에 가입한 인물이다 (『구회원명부 舊會員名簿』, 『재단법인 동래 기영회 170년사』, 동래 기영회, 2016. 133~146쪽).

46) 이 때 연회를 맡았던 이들은 박덕업(말뚝이), 문장원(원양반, 영감), 노진규(차양반), 김영현(모양반), 김희영(넛재양반), 양극수(할미), 이남선(제대각시)이었으며, 이중 동래 기영회 회원은 아무도 없다(천재동, 위의 글, 285-286쪽에 명단이 나온다. 283 쪽에는 1946년에 연회한 인물 명단도 있다. 한편 천재동은 이 때 신우언을 적극 설득한 것은 민속학자 정상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준협회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서서히 동래 기영회와 동래야류의 관계들은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⁴⁷⁾ 그렇게 시간이 흐른 현재 필자가 동래 기영회와 동래야류보존회 주요 인물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동래 기영회와 동래야류의 교류는 현재 없는 상태이며, 기록에 남아있는 긴밀했던 관계와 의미부여는 더 이상 증언되지 못하고 있다.

동래 기영회는 봄가을로 야외 놀이를 가졌다. 이 야외놀이를 ‘불상추놀이’라 불렀다. 불상추로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통상 부산·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존재하며, 속칭 ‘해추’(또는 해초)라 불리는 회취(會聚)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놀이에는 기생과 이름난 예술인들이 초청되었다. 동래 기영회 회원들의 놀이이긴 하지만, 야외에서 진행되는 만큼 인근의 주민들은 이 구경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⁴⁸⁾ 동래야류의 문장원도 그 때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또 동래 기영회는 춘추로 이동백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 화중선 이이라든지, 내가 줄 하는 사람, ** 해가지고, 그 저 그아전 집 자제 분들이니까, 부인네들이 그 밥상놀음이라 해가지고, 일 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어, 봄 되믄. 이걸 반드시 그런 광대를 불러가, 돈도 충분하니 주고, 그때 뭐 이동, 그 이동백씨.

판소리. 그분은 풍채도 좋고, 여 *수염도 흰히 나아가, 이럴 때 그

47) 본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동래 기영회 구성원에게 물어보면 전혀 자신의 조직은 ‘동래야류’와 관계 없는 것처럼 말했다. 반대로 동래야류의 구성원에게 물어보면 기영회의 역할에 대해 알지만 언제부터 이들과의 교류가 끊어졌는지를 소상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48) 이런 사례는 통영의 세습무들이 통영 용화사에서 가졌던 ‘산수계’의 양상과 동일하다. 이들 세습무들은 악공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고, 권번에서 선생의 역할들을 했었다. 이들의 봄날 화전놀이와 같은 ‘산수계’는 그들 스스로 친목을 다지는 행사인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있어 문화공연이 되었다. 산수계가 열리는 날이면 통영 섬들에 살던 사람들이 구경을 위해 배를 타고 통영 시내로 들어왔다고 한다.

린 사람은 기영회에서 불러가. 화중선이, 화중선이 뭐 볼게 있어야지
인물도 그렇게 몬하고...(후략)⁴⁹⁾

비록 사적인 모임이라는 한계는 뚜렷하지만, 동래 기영회의 봄놀이는 예술가들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의 관람 기회를 제공해주었음 보여주는 것이다.

IV. 무형문화재로서의 동래 기영회 가치 검토

동래 기영회는 살아있는 동래의 역사이다. 모임 자체는 1846년에 태어났지만, 그 모임을 주도한 이서와 무임의 ‘향리’ 집단은 고려와 조선 을 두루 통한다. 또한 동래 기영회를 주목하는 것은 모임 자체가 아닌 ‘동래’라는 지역과 사회계층적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텍스트라는 점이다. 19세기 소소하게 시작한 친목모임이 21세기 현재에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사로운 것이 공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전환하는 갑오개혁과 일제강점기는 이런 전환을 요구한 시대의 부름이었고, 동래 기영회는 적극 그 에 대응하였다. 의례, 교육, 사회·경제, 문화 등 한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 두루 역할을 감당했다. 바로 이런 조직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 되고, 또 국가나 지역사회의 공식적 인정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공식적 인정의 방식은 여럿이겠지만 본고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최근의 무형문화재 의 정책이 과거 기·예능 중심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다. 특히 ‘생활관습 과 전통지식’ 분야의 신규 지정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

49) 김영희, 앞의 책, 54쪽.

재로서 동래 기영회를 검토하는 것은 필자의 상상력이기 보다는 이런 현재적 문화재 정책 분위기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동래 기영회는 현행 무형문화재의 범주에서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에 해당되는 문화이다. 동래 기영회의 무형문화재로서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전승가치와 전승환경이다. 이 두 축은 필자가 설정한 것이 아닌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함께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⁵⁰⁾

1) 전승가치

- (1) 역사성 - 전승기간, 역사적 근거 신뢰성
- (2) 학술성 - 연구 기여 가능성, 자료로서의 가능성
- (3) 예술성 · 기술성 - 고유성 수준, 형식미 · 내용미, 표현미, 기능성 정도
- (4) 지역성 - 지역 대표성, 한국 대표성

2) 전승환경

- (1) 사회문화적 가치 - 형태 지속성,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여도, 문화다양성 및 창의성 기여도
- (2) 지속가능성 -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

본고에서 이를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전승가치 부분인 1) 역사성, 2) 학술성, 3) 예술성 · 기술성, 4) 지역성만을 다루고자 한다.

50)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 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 388호, 일부개정 2016년 3월 23일).

1. 동래 기영회의 역사성

역사성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세 가지로 전승된 기간,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이다.⁵¹⁾

<표 6>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선정 조사지표 중 역사성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역사성	전승된 기간	○ 전승된 연수(年數)	정량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정성

동래 기영회는 유형의 소장 고문서를 통해 그 설립연도가 1846년임을 밝히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이다.⁵²⁾ 전승기간은 정량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100년 이상의 경우 최고 평점을 받을 수 있는데, 동래 기영회는 바로 최고점의 전승 기간을 갖고 있다.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는 유형 기록이 일천한 무형문화재의 경우 불리한 기준이다. 그래서 과거 조선왕조실록의 편린으로 비약적인 연결을 짓는다거나, 다행히 1920, 30년대 일본인 학자들의 짧은 민속조사 기록들을 근거로 내세우곤 한다. 대신 부족한 유형적 기록을 보충하기 위하여 구술자료를 중요시한다. 그에 비해 ‘동래 기영회’는 뚜렷한 역사적 근거가 남아있는 점이 장점이다. 그것은 곧 기영회가 간직해왔

51) 다음의 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 일부개정 2016년 3월 23일)’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중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이다.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종목은 ‘지정’이라 하고, 그 종목을 전승하고 있는 단체·개인, 즉 보유단체 또는 보유자는 ‘인정’이라 표현한다.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 조사지표는 차이가 있다. ‘지정’에서는 전승가치 부분이 중요 핵심이고, ‘인정’에서는 전승능력과 환경이 핵심이다.

52) 물론 기영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세검당, 안일당을 감안하면 그 역사적 시점은 이 보다 상회한다.

던 고문서들을 의미한다.⁵³⁾ 그리고 이 중 18-19세기의 상급 직책 무임을 역임한 인물들의 성명이 기록된 『동래무청선생안』은 2015년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2. 동래 기영회의 학술성

학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과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다.

<표 7>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선정 조사지표 중 학술성

구분	조사지표	측 정 기 준	비고
학술성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정성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정성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은 해당 문화재(동래 기영회)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기여하는가를 묻는 항목이다. 앞서 말했듯이 동래 기영회는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가장 핵심 개념은 ‘한국의 전통 공동체 문화인 계(契)’이다. 오늘날 국가 위난의 시기에 국민의 통합적 힘들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한다. IMF 시기의 금모으기 운동, 서해 기름유출 사고시 자발적 방제 작업, 2002 월드컵의 거리 응원, 촛불 시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런 한국의 집단 결속력을 단선적으로 ‘계’문화와 연결지을 순

53) 다음의 기록들에서 그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훈상·민선희, 앞의 논문, 1993. 「기영회 고문서 목록」, 『재단법인 동래 기영회 170년사』, 동래 기영회, 2016. 205~208쪽에 그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없더라도 개인 보다는 집단의 힘을 믿으며, 그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지속시켜오고 있음에 대한 반증은 될 것이다.

동래 기영회는 그간 학술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주로 역사학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주된 키워드는 ‘향리’였다.⁵⁴⁾ 동래 기영회를 주목하는 것은 곧 읍치 사회의 향리 계층을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되며, 이에 대한 이해는 곧 한 지역사회가 어떤 인적 시스템화 하에서 움직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지금까지 한 지역의 이해를 막연하게 양반과 민중으로 이분(二分)하여 이해하는 것과 달리 외부에서 부임하여 잠시 있다 떠나는 상층 관리, 대대로 읍치 외곽에 토지를 소유하며 기득권을 유지해온 양반, 읍치 지역에 거주하고, 그 직을 세습하던 향리, 그리고 인구 대다수에 해당되는 민중 등 다양한 인적 계층의 관계들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동래만의 특징은 아니며, 읍치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인 만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과의 경제 교류,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지역 전통문화 전승 등에 관한 연구들에 있어서 동래 기영회 또는 인물들이 중심 역할을 하였음이 연구되었다.⁵⁵⁾

54) 이 분야는 이훈상이 그 연구의 선편을 잡은 이후 손숙경, 민선희 등이 후속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훈상·민선희, 앞의 논문, 1993. 이훈상·손숙경, 앞의 책, 2009. 손숙경, 『19세기 후반 관왕 승배의 확산과 관왕묘 제례의 주도권을 둘러싼 동래 지역 사회의 동향』, 『고문서 연구』 23, 2003; 『19세기 중반 동래 지역 기영회의 결성과 그 역사적 의미』, 『역사와 경계』 83, 2012; 『한말 식민지기 동래 지역 노년 연령집단 기영회와 이들의 문서 I』, 동아대 석당학술원 한국학 연구소, 2014; 『한말 식민지기 동래지역 기영회의 사회활동과 경제기반』, 『석당논총』 68, 2017.

55) 김동철, 『19세기 후반 동래상인의 존재와 활동—都中 洪在昇, 朴時奭, 李塤의 사례』, 『지역과 역사』 38, 2016. 김승, 『한말 일제하 동래 지역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지역과 역사』 6, 2000. 변광석, 『동래 기영회의 활동과 변화를 통해본 지역성』, 『역사와 경계』 84, 2012. 이훈상, 『식민지기 경남 지역사회의 탈춤 “부흥” 운동과 주도자들-동래 야류 연행의 문화정치학-』, 『대동문화연구』 79, 2012.

3. 동래 기영회의 예술성·기술성

예술성·기술성은 고유성(독특성)의 수준, 형식미·내용미·표현미의 수준, 기능성 정도가 그 세부 지표이다.

<표 8>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선정 조사지표 중 예술성·기술성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예술성 · 기술성	고유성의 수준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정성
	형식미·내용미· 표현미의 수준	형식미, 내용미와 표현미의 수준 정도	정성
	기능성 정도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평가지표는 과거 국가무형문화재가 기·예능 중심으로 지정되어왔기에 존속하고 있는 항목이다. 사실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분야는 새로운 지표를 설정해야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정비가 따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핵심 기·예능인데 이것을 측정할 수 없는 종목들이 존재한다. 이른바 단체 종목 중 특별한 기·예능이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줄다리기가 그런 예일 수 있다. 줄다리기는 한 개인의 뛰어난 역량으로 인하여 줄을 제작하지 않는다. 수직적인 명령 체계는 있으나 그것이 기·예능적 역량에 의한다기 보다는 연령에 의한다. 따라서 이런 종목의 경우는 필자 경험상 예술성·기술성의 척도 그대로를 평가하기 힘들므로 심사자들의 사전 또는 현장 협의를 통해 지표를 재설정한다.⁵⁶⁾ 따라서 예술성·기술

56) 이런 이유로 특정 개인의 기·예능이 측정되지 않는 단체 종목은 보유자 없는 종목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지정 때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자 없는 종목’으로 명시하여 지정하고 있다. ‘동래 기영회’ 또한 보유자 없는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성 대신 이 문화의 핵심을 드러낼 고유성·사회기능성으로 이 부분의 평가를 하는 것이다.⁵⁷⁾

동래 기영회의 핵심 개념은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의 전통 공동체 문화인 계(契)’이다. 100년 이상의 확실한 역사적 전고를 가지고 있는 계는 드물다. 게다가 개인 간, 문중 간 계가 아닌 한 지역권에 그 영향력을 가지는 이른바 ‘공공성’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는 계는 드물다. 읍치 지역에 으레 있었을 퇴임 향리 중심의 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곳은 이제 남원과 동래뿐이다. 동래 기영회는 단순히 퇴임 향리들 간의 친목도모, 상호부조의 사사로운 역할을 벗어나 일제강점기에는 국권 회복, 애국계몽운동들을 전개하면서 그 공공성을 획득해왔다. 이것은 곧 동래 기영회의 고유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전근대에는 계급적 폐쇄성을 가지고, 계원들의 사사로운 모임이었던 동래 기영회는 근대기에는 의례(송공단 향사, 칠충제, 거사단 향사, 관황묘 향사, 영보단 제사), 근대 학교교육,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은행, 동래야류로 대표되는 지역 전통문화 복원 등 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점차 공공성을 획득해왔다.

이는 동래 기영회의 사회기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그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래’ 지역에서는 유효하게 그 기능을 발화하고 있어 무형문화재로서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검토대상이 된다. 이런 사회관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 가치를 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기

온당하다(단, 보유단체는 명백하게 있으므로 ‘단체종목’에 해당된다).

57)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 ‘예술성·기술성’을 측정할 수 없는 종목에 대한 지표를 검토하고 있다.

영회'라는 모임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된다. 그 기영회라는 역할과 의미가 동래라는 지역에서 여전히 발휘되고, 동래의 지역민들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동래 기영회'는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동래 기영회의 지역성

지역성은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표 9>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선정 조사지표 중 지역성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비고
지역성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먼저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은 해당 문화가 지리·역사적 배경과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이를테면 다른 지역에서 전파된 경우는 이른바 '원조'가 존재하기에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또 이 문항은 해당 문화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아이콘(icon)인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쉬운 예로, 이탈리아 하면 '피자와 파스타'가 떠오르듯, 부산 또는 동래 하면 '기영회'가 떠오르거나, 그렇게 가시성이 제고된 상태가 아니라면 충분히 그렇게 연결지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동래 기영회는 단연 동래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콘이다. 조선 후기 동래부 군장관들의 집무소인 '장관청(將官廳)', 역대 무임들의 명단을 기재한 '동래무척선생안'이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부산의 역사인물로서 첫손에 꼽히는 것이 임진왜란 시 순절한 동래

부사 ‘송상현’인데, 그의 낯을 기리는 ‘송공단 향사(현재는 추념식)’을 1930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지금은 의례 주체는 바뀌었지만 칠충제, 거사단 향사, 영보단 제사 등을 근대까지 이어왔다. 따라서 동래의 역사에는 ‘기영회의 역사가 존재한다. 아울러 부산의 역사는 동래의 역사와도 그 궤적을 함께 하는 만큼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V. 향후 필요 조치

이 글은 무형문화재 신법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개념 확장이라는 정책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무형문화재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그 대상들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집단성,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준다 여겨지는 ‘한국의 계(契)’ 문화에 주목하였다. 계의 종류가 너무도 다양한 양상이어서 이를 모두 다룰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자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 저인망식 현지조사가 필요하다. 그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동래 기영회’라는 명칭한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 검토를 시도하였다. 가장 큰 그림은 동래 기영회를 위시하여 한국의 계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부산시에서도 ‘동래 기영회’에 대한 무형문화재 관점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 여겨져 이 글을 마련하였다.

무형문화재로서 ‘동래 기영회’에 대한 관심을 둔다면 몇 가지 실질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지역사회, 특히 지방자치단체 일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주요 전승자라 할 동래 기영회 회원들이다. 먼저 부산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작업이 필요

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례 정비를 통한 무형문화재 범주 명문화
- 2) 문화재위원 구성시 ‘전통관습과 전통지식’ 관련 전공자 포함
- 3) 부산시 무형문화유산 잠재목록 사업 진행

첫 번째 조례 정비를 통한 무형문화재 범주 명문화가 필요하다. 아직 부산시에서는 국가에서 마련한 국가무형문화재의 확장 범주를 수렴하여 그 지정 대상 가능 범주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화재위원을 구성할 때도 ‘전통관습과 전통지식’ 관련 전공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 기·예능 중심의 문화재위원이 구성되면 ‘전통관습과 전통지식’ 범주에 대한 신규 지정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보통 문화재의 신규 지정이 민원성으로, 단체나 개인의 지정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통관습과 전통지식’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전승하지 않기에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직접 검토하는, 이른바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신법의 확장 범주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인적 구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가장 긴요한 사항이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잠재목록(또는 예비목록) 리스트가 필요하다. 문화재의 지정이 목소리 높은 개인과 집단에 의해서만 지정되면, 가치는 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종목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전승 단절이 되곤 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지정 예측을 위해서 전체적인 리스트업(list-up)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재 지정과 별도로 ‘동래 기영회’는 동래와 부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에서는 중요한 것이 전승자(또는 전승집단)와 전승공간이다. 전승집단으로서 ‘동래 기영회’는 사적 친목모임으로 출발했고,

그 가입 조건이 세습되는 폐쇄적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동래의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면서 지역모임으로 확장했다. 1960, 70년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그 역할이 축소되어 오고 있다. 비록 가입 조건에 이서와 무임의 자손들이라는 세습 조항을 없애고 명망있는 일반인들로 확장하고,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만 예전만큼 그 중요성을 지역민들이 알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현재 동래 기영회 인원들은 역사적인 그들의 정체성들을 놓쳐가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왕제사’ 부분이다. 1950년대에 관왕묘가 훼손되면서 그 의례 또한 전승 단절되었다. 일시에 그 의례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고, 동래경로당에서 그 제사를 지속해왔었다. 그러나 기영회와 관왕제사의 관계는 단절되었다.⁵⁸⁾ 그러나 원래 송공단 옆에 있었던 경로당이 현 위치(동래로 148번길 5)로 이전하는 즈음에 더이상 관왕제사는 지속되지 못했고, 그 간 보관해왔던 관왕도 또한 개인 소장자에게 넘어간 상태이다. 현재 기영회 구성원들은 이런 과정, 심지어 관왕제사를 자신들이 주도했다는 사실마저 모르고 있다.

동래 기영회는 1920년대 이후 동래야류와 줄다리기 복원의 중심에 있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연회를 주도했다. 그 노력이 1967년 동래야류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차츰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현재에는 동래야류와의 관계를 아는 이가 드물 정도이다.

‘동래 기영회’의 역사적 가치와 동래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들을 되새기며, 그 영향력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각성이 함께 요구된다. 많은 무형문화재 전승집단들은

58)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경과를 증언해줄 사람은 없었다. 다만 동래경로당에서 관왕도를 소장하면서 관왕제를 지내왔다는 부분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래경로당 한태병 회장과 의 필자 인터뷰, 동래경로당, 2018. 7. 10.)

그 전승이 관례적으로 행해왔던 만큼 해당 종목의 지식들의 중요성이 나, 그 체계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외부인들의 관심이 반대로 전승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전승해오고 있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식들을 체계화 하곤 한다.⁵⁹⁾

따라서 ‘동래 기영회’의 무형문화재 지정 타당성 검토 작업 정도만 해도 ‘동래 기영회’ 내부 구성원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리라 예상된다. ‘동래 기영회’가 가장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리되고, 그 내용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유됨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의 조직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동래 기영회와 관련한 전승공간이 동래 곳곳에 많다. 동래 기영회와 관련한 곳들만 선으로 연결하면 하나의 관광여행 코스가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은 장관청 한 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외의 공간들에 대한 관심들도 필요하겠는데, 기영회의 창립공간인 상춘정터(부산 동래구 동래로152번가길 21-9 동래유치원), 관왕묘가 있었던 곳(동래구 명륜로 109), 영보단(동래구 복천로 63), 동명학교(守城廳·鶴巢臺 아래 舊鶴山女中 터)⁶⁰⁾ 등이 그곳들이다. 이들의 위치를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9) 예를 들면, 동해안곳에서 청보가 청보 장단이 5장 구조로 되어 있다고 현재는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체계가 정리된 것은 문화재 지정 이후 외부 연구자들이 현지조사하면서 이루어졌다. 연희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몇 장이다. 이것이 몇 장이다 인지하지 않았다. 그냥 전체 음악을 리딩하는 장구의 변화에 따라 장단들을 넘겨왔을 뿐이었다.

60) 『재단법인 동래 기영회 170년사』, 동래 기영회, 2016. 79쪽.



<그림 1> 동래 기영희의 전승공간

| 참고문헌 |

- 경상남도, 『방풍림 관리실태 및 보존대책-방풍림 조성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분석』, 경상남도, 1994.
- 강경환·김정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의 수용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문화재』 4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강성복, 『400년 향리조직 남원기회南原耆老會』, 『지역무형문화유산목록03-남원의 무형문화유산』, 국립무형유산원, 2007.
- 김동철, 『19세기 후반 동래상인의 존재와 활동-都中 洪在昇, 朴時曠, 李塤의 사례-』, 『지역과 역사』 38, 2016.
- 김 승, 『한말 일제하 동래 지역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지역과 역사』 6, 2000.
- 김영희, 『한국 근현대예술사 미술채록연구 시리즈 79-문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 동래 기영회, 『재단법인 동래 기영회 170년사』, 동래기영회, 2016.
- 변광석, 『동래 기영회의 활동과 변화를 통해본 지역성』, 『역사와 경계』 84, 2012.
-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들놀이』,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1989.
- 정수진,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정치학: 유네스코 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6, 2015.
- 손숙경, 『19세기 후반 관왕 승배의 확산과 관왕묘 제례의 주도권을 둘러싼 동래 지역 사회의 동향』, 『고문서 연구』 23, 2003)
- _____, 『19세기 중반 동래 지역 기영회의 결성과 그 역사적 의미』, 『역사와 경계』 83, 2012.
- _____, 『한말 식민지기 동래 지역 노년 연령집단 기영회와 이들의 문서 I』, 동아대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14.
- _____, 『한말 식민지기 동래지역 기영회의 사회활동과 경제기반』, 『석당논총』 68, 2017.
- 손숙경·이훈상, 『조선 후기 동래의 무청선생안과 무임총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9.
- 심상교, 『동래야류 전승과정 연구 1-문장원, 천재동 증언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47, 2003.
- 이훈상, 『조선후기 이서집단과 무임집단의 조직 운영과 그 특성-전라도 남원의 각종 선생안-』, 『한국학논집』 17, 1990.

- _____, 「19세기 후반 향리 출신 노년 연령집단과 읍치의 제의 그리고 포폴러 문화」, 『민속학연구』 27, 2010.
- _____, 「식민지기 경남 지역사회의 탈춤 “부흥” 운동과 주도자들 -동래 야류 연행의 문화정치학-」, 『대동문화연구』 79, 2012.
- 이훈상·민선희, 「조선 후기 동래의 지배 엘리트와 이에 관한 고문헌 자료」, 『향도부산』 10, 1993.
-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이 연구』 집문당, 1986.
- 천재동, 「동래야류연구」, 『서낭당』 4, 1973.

투고일 : 2019. 05. 27. 심사완료일 : 2019. 07. 05. 게재 확정일 : 2019. 07. 25.

| Abstract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alue of
“Dongnae Kiyounghoe”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Kim, Hyung-Kun

This paper was written to bring attent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ue to the change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or, more precisely, the expansion of designated categories.

As the policy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esignates and manage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Busan also needs to change the designation of ne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located in the city. Thus, the discussion is based on the example of the “Dongnae Kiyounghoe(耆英會).”

Up to now, countries and cities have traditionally used performances and function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Recently, however, categories such as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and social practices have been added due to the influence of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se categories have been newly designated 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earnest, and the designation of these categories is expected to be active in the future. This is why it is necessary for cities and provinces to prepare for future changes. To that end, the researcher stressed the necessity of listing the committee's human resources and the list of preliminary categories to the expanded area.

Dongnae Kiyounghoe is a kye (契) that has continued to this day. It was organized in 1846 (King Heonjong's 12th year) by Dongnaebu(東萊府)'s elderly retired Yiseo(吏胥) and Mooims(武任).

The group eventually played a public role in the Gabo(甲午) Reform, when the old regime collapsed, a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undermining the sovereignty. It has continued to serve as the opinion leader group in Dongnae. The role of the group spans almost all sectors of the community, such as rituals, education, socio-economics, and culture. The role of the Dongnae Kiyounghoe was found to be in-line with “traditional life practices, includ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among the newly expanded categ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Keywo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f Busan-city, Kiyounghoe(耆英會), Dongnae in Busan, Kye(契), Life Practices